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의6서식] <신설 2022. 7. 20.>

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

접수 번호	접수일	신고수리 번호	수리일	신고인	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	비료의 종류	공급 또는 사용			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 (지번)	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
변경 접수 번호	접수일	변경신고 수리번호	수리일				일시	물량(kg)	면적 (㎡)		

297㎜×210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